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그 밖에 구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
2. “치과치료”란 구강검진(문진, 구강위생검사, 방사선 사진촬영),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올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 및 절주, 칫솔질), 예방진료(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를 말한다.

3. “치료지원비”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 되는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절차
3. 아동 구강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지원사항
4.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승인으로 본다.

**제5조(지원대상)**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 검사, 예방 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 건강 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를 통해 정한다.

**제7조(치료지원비 신청)** ①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청구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서는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2. 치의학 및 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소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 선정,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협의체의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초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학생의 구강 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사람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u></p> <p>2. <u>“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일정금액)를 말한다.</u></p> <p>3. <u>“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u></p>	<p><u>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아동</u>----- ----- <u>지속적인 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u> ----- ----- ----- <u>치과 치료지원</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그 밖에 구강관리가 필요하</u></p>

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지역 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아동을 말하며, 그 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

다고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

2. “치과치료”란 구강검진(문진, 구강위생검사, 방사선 사진촬영),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올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 및 절주, 칫솔질), 예방진료(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3. “치료지원비”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되는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절차
3. 아동 구강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지원사항
4.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한 지원

4.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의원  
의 관리

<신 설>

제4조(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세  
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액) ①구청장은 학생 치  
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액은 「의료법」 제  
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승인으로 본다.

제6조(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학생 치과주치의는 지  
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  
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불소도  
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이  
다.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은 「의료법」 제27  
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청장의 사  
전승인으로 본다.

제5조(지원대상) 아동 치과치료 지  
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  
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계획  
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삭 제>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  
료범위)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서  
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이하 “보  
건소”라 한다)와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  
강 검사, 예방 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 관리 전반에 관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 ①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치과주치의는 제6조에 따른 진료행위 본인부담금을 대상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제8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10조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에서 정할 수 있고

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를 통해 정한다.

제7조(치료지원비 신청) ①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 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  
----- 신청서를 제출해야 -----.

1. 의료기관명-----  
----- 주소
2. ----- 아동-----  
주소-----
3. 청구비용
4. -----  
밖-----

② 신청서는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필요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  
지원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2. 치의학 및 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소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치  
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

<신 설>

<신 설>

제9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 2.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진료내용
- 3.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
- 4.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

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삭 제>

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진구보건소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치의학 및 의료 관련 전문가

3.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보건소장

5.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위원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

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협의체 수당 등) 지역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  
--.

1. (현행과 같음)
2.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 선정, 진료 범위----- 치료지원비 ----- 관한 -----
3. ----- 아동 치과 치료지원-----  
-----

제10조(지역협의체의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 . -----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치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제13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환수 등) ①구청장은 지원대상인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고 치과주치의 제공 의료기관에서 배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  
-----  
-----  
-----를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삭 제>

<삭 제>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

###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4. 작성자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02-450-1940)

만성질환관리팀장 조정미  
(02-450-1946)

담당자 김선영  
(02-450-1949)

**붙임****관계법령****법규명**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규명**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9., 2024.2.20.>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5. 기타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법규명**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2. ~ 11. (생략)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법규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소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T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